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20. 6. 9.)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4조).
- 다. 통합 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예수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기업에 대한 용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조).
- 라.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시장이 설립한 공기업에 대한 공단체 상환을 위한 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사무를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 바.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하고,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반환할 수 있음(안 제8조).
- 사. 시장은 예탁금 및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할 때 국공채의 이자율, 시금고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아. 기금의 조성·재원조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10조).
- 자. 기금운용관은 재정기획관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은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하며, 기금

- 출납원은 각 계정의 운용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지정함(안 제12조).
- 차. 두 기금의 통합에 따라 감채기금의 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카.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3조).
- 파. 현행 조례에 따른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결산잉여금 등은 조례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 계정에,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에 승계함(안 부칙 제4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2019.6.9.)으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재정투융자 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병합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구분·운용하려는 것임.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 배경 및 개정안의 입법 배경

- 종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통합 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종전 제16조)<sup>1)</sup>
-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세원으로 구성되어 회계연도 간 수입의 변동성이 큰 문제<sup>2)</sup>를 해소하고자,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2017.7).

---

1)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부서별로 기금을 안정성 위주로 관리하면서 많은 여유자금이 단순 이월·적립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기금은 자금 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음.

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와 같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세입이 전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기도 하는 반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 2014년·2015년의 경우 세입액이 전년 대비 14% 가량 증가하는 등 지방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은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다른 회계는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음.
-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중요해지면서 회계연도별 재정변동 상황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여건을 종합해 여유자금의 용통과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지방기금법’ 과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었음(2020.5.4. 개정).
- 서울시는 ‘지방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와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역할을 해왔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음.

##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1) 총론(안 제1조 ~ 안 제4조)

-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맞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며 (안 제4조), 현재 재정투융자기금<sup>3)</sup>과 감채기금<sup>4)</sup>이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각각 승계토록 하고 있음(부칙 제4조).
- ‘지방기금법’ 제4조<sup>5)</sup>는 기금을 신설·운영하는 경우에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말 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새로운 기금의 신설이 아닌 기존 기금의 승계라는 점에서 두 기금의 조례상 존속기한인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해야 할 것임.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2017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기금법’ 에

---

3) 1992년부터 재정투융자기금을 설치해 특별회계의 잉여금과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활용하여 왔음.

4) 증가하는 부채의 상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2001년 감채기금을 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원리금에 상환하고 있음.

5)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르면, 2022년 이후 기금의 존속을 위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를 새로 개정하여야 함.

(2) 조성재원 및 용도(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기금법’ 제16조는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 중 조례상의 비율 안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지방기금법’ 제16조 계정별 재원 및 용도 등 관련 규정>

구분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약받는 자금(예수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약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용도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약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 사용은 예외임.
공통	그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안 제5조는 현행 재정투융자기금 조례를 참고해 통합 계정의 수입 재원을 구체화하고, 지출 용도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약’ ,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기업으로의 용자’,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폭넓게 규정해 기금의 통합 관리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음.

< 통합 계정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 재원 규정 >

전부개정안 제5조 제1항	재정투융자기금 조례 제4조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서울특별시가 공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융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4. 통합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 포함)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그 밖에 통합 계정 조성을 위한 수입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 안 제6조 제1항은 감채기금 조례를 참고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 재원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에서의 예수금, 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법령상 의무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전입토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 제2항 역시 감채기금 조례를 참고해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의 지출 용도를 규정하고, 전년도말 기준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제1호)에 사용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부채 규모의 감축이라는 계정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였음.

<재정안정화 계정과 재정투융자기금의 지출 용도 규정>

전부개정안 제6조 제2항	감채기금 조례 제4조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전년도에 적립금 총액의 50% 이상)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해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시공사 또는 공단에 공사채 또는 공단체의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또는 융자금(제4조 제2항)
3.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일반회계·특별회계)	
4.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반회계·특별회계)	
5.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	2.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6.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의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낮은 경우(제3호)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제4호)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신속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3) 기금의 관리·운용 등(안 제7조~제9조, 제12조)

- 안 제7조는 기금의 예치·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별도 계좌 설치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운용, 기금 운용·관리 사무의 금융기관 대행, 재정안정화 계정의 통합 계정 예탁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의 기금운용 및 예탁 지시<sup>6)</sup>와 예탁기한 만료 전 반환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시장의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재정기획관), 분임기금운용관(통합 계정 :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계정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기금출납원(각 계정 담당 사무관)으로 회계공무원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는 총괄기금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 담당 실·본부·국장으로 정하고 있어(제18조),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sup>7)</sup>의 경우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기금관리관이면서 기금운용관이 됨.

6)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18조(회계관직 지정 등)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해당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국제계정, 지역개발기금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재정기획관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와 달리 따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됨,

####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0조, 안 제11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 기금의 조성·재원 조달,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 주요 항목지출 금액의 변경, ▶ 기금운용성과 분석, ▶ 예수·예탁 등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임(안 제10조 제2항).
-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임기 2년(연임가능)인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과 재정자금 운용 전문가로 구성됨(안 제10조 제3항·제4항).
- 위원회의 대표권과 운영권을 갖는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정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함(안 제10조 제6항).

-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로 다수의 서울시 위원회에서 위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위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맡는 등 시정의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서울시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해 위원회에서 집행부 위주의 일방적인 운영이 우려되므로 위촉 위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하나의 위원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두 계정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채기금 조례에 따르면, 감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음(제6조 제3항)
-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 승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부채 감축 등 서울시 재정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음.
- 다만, 계정 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고(통합 계정 :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 기금 계정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지금까지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5) 감채기금의 폐지와 경과조치 등(부칙 제1조~제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각각 별개의 계정에 승계하는 방식으로 신설되므로 부칙에서 추가로 시행일, 감채기금의 폐지, 기금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우선, 회계 운영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라고 정하였고(부칙 제1조), 감채기금 조례를 폐지해 차후 혼선을 방지하고 있음(부칙 제2조).
-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 계정으로,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자산, 채권, 채무 등 권리·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이 승계되고 기수립된 두 개 기금의 2021년도 운용계획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부칙 제4조).
- 그리고, 기존의 기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타 기금의 해당 문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른 조례를 개정하였음(부칙 제3조).
- 그리고, 이 밖에 부칙에 위원회 통합으로 인한 위원의 자연 승계 규정이 없어 기존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 해촉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하게 됨.

- 감채기금운용 심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게서 대행하고 있어 위원 변동은 없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성만	02-2180-8055

[참고자료]

---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 안내

---

2020. 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조치 안내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5.20.), 법률 공포(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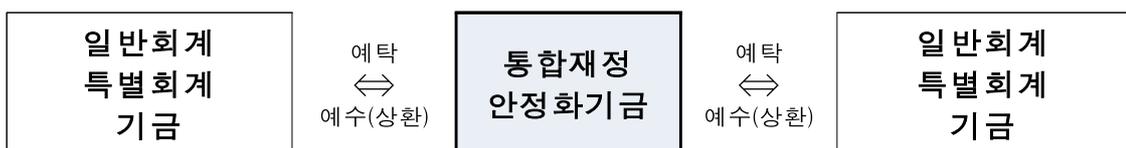
## I 개정배경

- (지방재정 비효율 개선)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잉여금)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개선 필요
  - ※ '19년도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순세계잉여금) 약 6조원 발생
- (자치단체 건의) '19년 하반기 신속집행 및 '20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지방재원 마련 관련 자치단체 건의사항
  - ※ 특별회계 예비비 등 여유재원을 일반회계로 예수·예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 근거 마련 요청

## II 개정내용

### 1 예수·예탁 근거 마련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신설(「지방재정법」 제9조의2)
  -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용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 예탁·예수는 '(신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관련 내역을 체계적으로 조망·관리
  -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 ②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

- 일부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 한도(1% 이내) 설정(「지방재정법」 제43조)
  - ※ 국가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 예비비(일반회계 + 특별회계) 편성
- 예수·예탁 근거 마련으로 한도 준수 가능

---

##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

-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sup>(신설)</sup>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설치\*
  - \*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
-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
  - (구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일반·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용도) 일반·특별회계 또는 타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 활용
  -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전출 활용)’으로 분리 운용

## Ⅲ 자치단체 협조사항

- (조례 정비) 예수·예탁 활용(추경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조례 준비(또는 제정)
  - ※ 다만,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개정법 상 ‘통합계정’으로 보아 특별회계 예비비 등 예수·예탁을 법 개정 즉시 활용 가능(부칙에 관련 내용 旣 반영)
- (특별회계 예비비 정비 준비) 법 개정 3개월 후 특별회계별 예산 총액의 1% 이내 예비비 편성이 적용되므로,
  - 특별회계 예비비 정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포함) 방안 사전준비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삭 제&gt;</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lt;삭 제&gt;</p>
<p>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p>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p>
<p>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li> <li>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li> <li>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li> </ol>
<p>&lt;신 설&gt;</p>	<p>③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li> <li>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li> <li>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li> </ol>

<p>&lt;신 설&gt;</p>	<p>④ <u>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lt;신 설&gt;</p>	<p>⑤ <u>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다른 회계로의 전출</u>  2. <u>지방채 원리금 상환</u></p>
<p>&lt;신 설&gt;</p>	<p>⑥ <u>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lt;신 설&gt;</p>	<p>⑦ <u>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u></p>
<p>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6조에 따른 <u>통합관리기금</u></li> <li>2. (생략)</li> <li>3.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u>통합관리기금</u>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li> </ol>	<p>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  -----  -----  -----  -----  -----  -----  1. <u>통합기금</u>  2. (현행과 같음)  3. ----- <u>통합기금</u>  -----  -----</p>

※ 붙임 조례(안)은 예시이므로 「지방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자치입법 관련 법령 등에 맞는 형식·절차와 자치단체별 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문 내용을 구성

##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0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특·광역시는 제29조의2)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출연금(서울·인천·경기)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광역단체만 해당)
3.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마련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설정 가능)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4조(승계) 「○○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